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3324
----------	-------

제출연월일 : 2025. 9. 26.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의 인증 수요가 없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우수식품등인증”을 “우수식품인증”으로,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을 “가공식품”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의2 중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을 “가공식품”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본문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조사·열람·수거 또는 점검”은 “조사·열람·수거”로, “해당 식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은 각각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본다.

제22조의2의 제목“(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공식품”으로 한다.

제22조의3의 제목“(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을“(우수식품인증 신청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식품등인증”을 “우수식품인증”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을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우수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식품등인증과”를 “우수식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식품인증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우수식품등인증과 정기심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수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를 “우수식품인증과 정기심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수식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도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로 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각각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식품등인증”을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식품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을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를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식품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우수식품등인증 또는”을 “우수식품인증 또는”으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우수식품인증기

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우수식품등인증”을 각각 “우수식품인증”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우수식품등인증”을 “우수식품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의”를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우수식품인증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우수식품등인증”을 각각 “우수식품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를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을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을”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우수식품인증 및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식품등인증을”을 “우수식품인증을”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우수식품등인증기준”을 “우수식품인증기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우수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우수식품인증 업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식품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 및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을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을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우수식품인증 및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각각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우수식품등인증”을 “우수식품인증”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를 “(우수식품인증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식품등인증을”을 “우수식품인증기관은 우수식품인증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우수식품등인증”을 “우수식품인증”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이”로, “우수식품등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을 “우수식품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우수식품인증을 받은”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인

증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식품등인증”을 “우수식품인증”로, “우수식품등인증기관(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를 “우수식품인증기관(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의)”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위”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5호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우수식품등인증”을 “우수식품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식품등인증을”을 “우수식품인증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식품인증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5조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3 및 제2호 중 “우수식품등인증”을 각각 “우수식품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내용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우수식품등인증”을 각각 “우수식품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를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을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을”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을 “우수식품인증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우수식품등인증”을 “우수식품인증”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중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 <u>우수식품등인증</u> ”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u>가공식품</u> 및 <u>음식점등</u> 의 원산지인증을 말한다.		7. ~~우수식품인증~~ -----		

		-----		<u>가공식품</u>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u>가공식품</u> 및 <u>음식점등</u> 의 원산지인증에 관한 사항		5의2. <u>가공식품</u>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 ④ (생 략)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 또는 기능		⑤ -----		

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제9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⑫ (생략)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수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열람·수거 또는 점검”은 “조사·열람·수거”로, “해당 식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대한민국

----- 제10항 -----

-----.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 경우 “조사·열람·수거 또는 점검”은 “조사·열람·수거”로, “해당 식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은 각각 “대한민국식

식품명인”으로 본다.

③·④ (생 략)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22조의3(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식품등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2. (생 략)

제24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품명인”으로 본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① -----

----- 가공식품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우수식품인증 신청의 제한) -----
----- 우수식품인증-----.

1.·2. (현행과 같음)

제24조(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
-- 우수식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

지정하여 우수식품등인증과 제 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우수식품등인증과 정기심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수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정하여 우수식품인증과 -----

-----.

----- 우수식품인증과 정기심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수식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도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
-----.

② ----- 우수식품인증기관-----

-----.

----- 우수식품인증기관-----

-----.

③ ----- 우수식품인증기관 -----

받아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

----- 우수식품인증기
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식품인증 -----

-----.

⑤ ----- 우수
식품인증기관-----

-----.

제24조의2(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
은 자(이하 “우수식품인증기관”
이라 한다)-----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u>우수식품등인증</u>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u>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u>	3. ----- ----- <u>우수식품인증</u> 또는 ----- ----- ----- <u>우수식품인증기관</u> ----- ----- ----- -----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u>우수식품등인증</u>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 ----- <u>우수식품인증</u> -- ----- -----
7.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u>우수식품등인증</u>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한 경우	7. ----- ----- <u>우수식품인증</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 ----- ----- ---
1. ~ 1의6. (생략)	1. ~ 1의6. (현행과 같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2. -----

법으로 <u>우수식품등인증을</u> 받는 행위	----- <u>우수식품인증</u>----- -----
3. <u>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우수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u>	3. <u>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우수식품인증의</u> ---- ----- ----- ----- ----- -----
4. <u>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u>	4. <u>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u>---- ----- ----- ----
5. <u>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u>	5. <u>우수식품인증</u>----- -- <u>우수식품인증</u>----- ----- ----- ----- ----
6. <u>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u>	6. <u>우수식품인증</u>----- ----- ----- ----- ----- ----
7. <u>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u>	7. <u>우수식품인증</u>-----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u>우수식품등인증</u> 또는 이와 유 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u>우수식품인증</u> ----- ----- ----- -----
8. <u>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 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 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 는 음식점등으로</u> 광고하는 행 위	8. <u>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으로</u> ----- ----- --
9. <u>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u> 광고하는 행위	9. <u>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을</u> ----- -----
제26조(<u>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 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u>)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우수식 품등인증을</u> 받은 식품의 품질수 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관계 공무원 및 <u>우수식품등 인증기관</u> 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u>우수식품인증 및 우수식품 인증기관의 사후관리</u>) ① ---- ----- <u>우수식 품인증을</u> ----- ----- ----- ----- <u>우수식품인 증기관</u> ----- ----- -----.
1. <u>우수식품등인증기준</u> 에의 적 합성의 조사	1. <u>우수식품인증기준</u> ----- -----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식품등인증, 정기심사 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열람·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3일 전까지 해당 식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② ----- 우수 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식품인증-----

③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 및 우수식품인증기관-----

-----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

④ -----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등의 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조사등을 하는 때에는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1의4. (생 략)

2. ~ 4. 삭 제

5.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

우수식품인증기관-----

-----.

-----.

⑤ (현행과 같음)

⑥ -----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은 -----

-----.

⑦ ----- 우수식품인증 및 우수식품인증기관

-----.

제27조(수수료 등) ① -----

-----.

1. ~ 1의4. (현행과 같음)

5. ----- 우수식품인증기관-----

려는 자

6. 제24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② (생략)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9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업종전환·폐업으로 우수식품

6. ----- 우수식품인증기관-----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

----- 우수식품인증-----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우수식품인증의 취소) --
----- 우수식품인증기관은 우수식품인증을 -----

-----.
-----.

1. ~ 3. (현행과 같음)

4. ----- 우수식품

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30조(승계) ①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
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우
수식품등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을
계속하여 생산·수입 또는 유통
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
인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
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
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
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
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
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

품인증-----

제30조(승계) ①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
의 -----

-----우
수식품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우
수식품인증을 받은 -----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
-----.

② ----- 우수식품인증
을 -----

-----우수식품인증기관(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의 -----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위-

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3조의2(청문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6.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② 삭 제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청문 등)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 우수식품등인증기관 -----

6. ----- 우수식품등인증 -----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식품등인증을 -----
-----.

④ -----

-----.

우수식품등인증기관-----
--.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의2. (생략)

1의3.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2.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의2.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우수식품인증기관

-----.

제36조(벌칙) ①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

----- 우수식품인증-----

2. ----- 우

수식품인증-----

----- 우수식품인증-----

<삭 제>

3.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
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3의2.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음식
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
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4. 제25조제5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
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
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25조제6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제25조제7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
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3. ----- 우
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
수식품인증을 받은 내용과 --

<삭 제>

4. ----- 우
수식품인증-----
우수식품인증-----

5. ----- 우
수식품인증-----

6. ----- 우
수식품인증-----
----- 우수
식품인증 -----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 -----
7. 제25조제8호를 위반하여 <u>우 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식 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u> 광고한 자	7. ----- <u>우 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 품을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 품으로</u> ----- -----
8. 제25조제9호를 위반하여 <u>우 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 는 음식점등을</u>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8. ----- <u>우 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을</u>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②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3 항에 따른 <u>우수식품등인증기 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 은 자</u>	1. ----- ----- ----- <u>우수식품인증기관</u> ----- -----
2.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u>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 니하고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u>	2. ----- ----- <u>우수식품인증기관</u> ----- ----- ----- <u>우수식품인증 또는</u> ----- -----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3. -----

취소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도 <u>우수식품등인증</u> 또는 정기 심사를 한 자 4. ~ 6의2. 삭 제 7. (생 략)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삭 제 1의2. ~ 3. (생 략)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u>우 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u>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 한 자 ② ~ ④ (생 략)	----- -- <u>우수식품인증</u> ----- ----- 7. (현행과 같음) 제38조(과태료) ① ----- ----- ----- -----. 1의2. ~ 3. (현행과 같음) 4. ----- <u>우 수식품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